MONO1199106980

* 단행본 <한국전쟁사료> 참고

韓國戰爭史料

歷史資料

陸本訓令, 敵戰鬪力 綜合評價書
休戰關係, 6. 25事變史(草稿)

(99)

<민간인 납치자 회송에 관한 건 보고>

수신: 국방부장관

발신: 휴전대책위원회 간사 김효학 대위

1953. 9. 20 ~

陸 軍 本 部

休戰對策研究會
關係書類

檀紀四二八六年九月二十日

休戰對策硏究會 幹事

陸軍大尉 金潤學

國防部次官 閣下

民間人被拉致者歸還에 關한 件 報告

首題件 六二五事變勃發即後 南韓各地에서 敵共產黨徒輩에 依하여 北韓으로 拉致된 大韓民國市民의 送還에 對하여 板門店休戰協商開始爾來 今日의 休戰協定이 調印되기까지 我國軍代表들의 熱烈한 主張과 眞摯한 努力이 거듭되어 왔음에 비추어 其間의 經緯와 結果를 別紙와 如히 依命調査報告 하나이다

別紙一、

現韓國軍第一軍團長 李亨根 中將은 休戰協商 第二代代表(當時陸軍少將)로서 自檀紀四二八四年九月 九月二日 至檀紀四二八五年一月三十一日 在任期間中 大韓民國出身被拉致人士返送에 對하여 左에 列記한 諸般努力을 加하였음을 當時의 國防部長官經由 大統領閣下에의 報告書中에서 拔萃하였음

一、檀紀四二八四年十二月十二日

捕虜問題에 있어서 小官으로 하여금 分科委員會에 參席하라는 조이 中將의 말이 있었으나 現在까지

晝夜로 屢次折衝한 結果 捕虜의 定義가 軍人
에 局限된다는 國際法以外에는 이 軍事會談에서
는 主張할수 없다 하고 또、捕虜交換技術問題에
있어서도 小官意見과 根本的 差異가 있음으로
小官으로서는 처음부터 이에 出席을 拒否하였으
며 以後도 必死的으로 繼續 主張하겠으나 一般
拉致人 抑留者는 이 軍事會談의 能力外의 것
이며 政府와 政府間의 問題라고 하는、代表團의
旣定結論에는 合法的 論據가 없음.
要는 本休戰會談은 萬事가 J.C.S (美國統合
參謀本部)의 命令대로 움직이는 純全한 軍事會
談이며、政治的 恒久的 平和會議가 아니라는 것

이 本代表團의 使命임 (以上意見具申)
「追伸」捕虜以外의 一般拉致者、抑留者交換問題는
UNC代表團에서는 別個會談에서 取扱할 重
大問題라 하나 萬一必要時에 對備하여
北韓으로 送還할수 있는 人員이 我國에 現在
얼마나 있는지 下示仰望

一、檀紀四二八四年十二月十五日
拉致人士도 捕虜로 看做하고 交換할것을 強力
主張하였으나 代表團들은 捕虜의 定義가 軍
人(軍屬包含)에 局限된다는 國際法을 主張
하여 이 問題는 軍事會談의 能力外이며 政府
와 政府間의 別個會談에서 取扱할 重大問題

라고 하면서 應諾치 않었음

此問題에 關하여 國際赤十字社代表 「바아리」氏와도 單獨私的으로 長時間 論議한 바 있었는데 亦是 別個取扱이 妥當할 것이라는 見解이었음 (以上 意見具申)

一 檀紀 四二八四年 十二月 十九日 1951. 12. 20.

一對一交換을 貫徹하고 殘餘의 傀儡軍捕虜는 政治會談時까지 代價없이는 返還치 말것、卽 其代價로 拉致抑留된 平和的인 一般韓國國民은 韓國에 返還될 것 (以上 建議)

拉致人交換을 主張할 때 大韓民國公報處編纂 拉致人士名簿 及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

會編纂名簿等名 一部式 計二部에 記載된 人名을 結局은 共産軍에게 提示하여야 하겠는데 提示하여도 可한지를 時急指示仰望

名簿만을 提示하면

1、名簿에 記載된 以外의 一般國民으로부터 不公平하다는 非難이 있을 것

2 共産軍에게 姓名을 提示하여도 그대로 應할 可能性이 稀薄할 뿐더러 오히려 指定된 拉致人에게 不利한 影響을 끼칠 憂慮가 있는 것

의 二点으로 보아 人名을 指定치 않는 것이 可하다고 判斷함 (以上 建議)

一 檀紀 四二八四年 十二月 二十六日 1951. 12. 26

* 가족회 명부 문제.

判明拉致人을 拉致人家族會及 公報處統計를 綜合
한데다가 加算하야 約 萬名으로 하고 이 萬名을 包
含한 共產軍捕虜数에 該當하는 拉致人을 送
還할것을 要求하였든바 今日 美國大使館으로
부터 韓國政府에서는 判明数를 二千五百名으로
보하고 있다고 通報가 있었음 (以上參考事項)

一. 檀紀四二八五年 一月 九日

UN軍側은 共產軍內部에 殘留하는 韓國軍人도
捕虜로 取扱하고 民間人도 歸還시키라고 強力히
主張。 共產側은 UN軍이 監禁하고 있는 三萬七千名
의 拉致人 萬六千名의 自己側 軍人과 五十萬名의
北韓人을 送還하라고 應酬、 (以上報告)

2,500명

一. 檀紀四二八五年 一月 十日

敵은 民間拉致人問題는 政治的問題라고 討議拒
否 (以上報告)

1952. 1. 10.

一. 檀紀四二八五年 一月 十三日

敵은 捕虜와 民間人을 混同치 말라고 하며 UN軍
側提案을 繼續拒否. (以上報告)

一. 檀紀四二八五年 一月 十五日

敵은 繼續하여 民間人을 交換할수 없다고 拒否
同時에 南韓側이 拉致한 五百萬以上의 北韓人을 送還
하라고 要求、

UN側은 우리는 拉致한 事實 없다고 拒否 (以上報告)

一. 檀紀四二八五年 一月 十六日

昨日(十五日)과 同一한 內容이 反覆되었음 (以上報告)、

一、檀紀四二八五年一月十日 ↓ 一月十六日

敵은 十二月三十日以來連日「民間被拉致人問題」는 政治問題임으로 捕虜問題와 混同시키지 말라」고 그 討議를 拒否하였음

然이나 小官으로서는 拉致人討議拒否는 韓國民의 慘酷한 分裂을 助長시키며 韓國을 內部로부터 崩壞시키자는 敵의 無慈悲한 侵略企圖의 暴露임으로 斷然코 이 野慾을 封殺하여야 만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以上報告)

UN軍代表團 및 共產軍에게는 우리韓國은 北韓으로부터 一切民間人을 拉致한 事實은 없다고 主張中

임。 (以上 意見具申)

一、檀紀四二八五年一月十八日

UN軍은 北韓軍內強制編入國軍 및 一般拉致人을 送還하라고 要求.

共產側은 一切拒絕 (以上報告)

一、檀紀四二八五年一月十九日부터 一月二十三日까지 四日間 同一한 內容(一月十八日會議)이 繼續反覆되었음.

(以上報告)

一、檀紀四二八五年一月二十四日

敵 ─ 民間人은 無條件送還할 用意가 있다고 明白히 말함. 然이나 그 時期 方法에 關하여는 言及을 回避함

UN軍 ─ 右記 敵側으로부터의 民間人의 無條件送

還을 促求 (又上報告)

一、檀紀四二八五年二月一日

『……捕虜問題에 있어서 強圧과 飢餓에서 呻吟하는 우리의 捕虜、그리고 被拉致國民을 鐵의 帳幕으로부터 救出치 못하여 本人을 그 家族의 慘憺한 心情에 想到할 때 本官은 實로 断腸의 悲情을 禁할 수 없는 바이다 ――』

(代表職을 辭任하는 辭職書에서)

一、同代表는 自 檀紀四二八四年十二月二十三日 至 檀紀四二八五年一月二十五日間、平和、國都、朝鮮、京鄕、自由、太陽、서울新聞紙上에 被拉致民間人返送에 對한 韓國軍代表로서의 信念을 鞏固히 하고 그 取할 態度를

明確히 하는 談話、聲明을 屢々히 發表하였고 한便 檀紀四二八四年十二月二十四日 平和新聞社는 그 社說에 左에 引用한 句節을 論說함으로서 我國軍代表가 休戰會談席上에서 如何히 努力을 継續하였는가를 三千萬國民에게 認識感銘케 한 事實이 있었음.

『(前略) UN軍에 收容되어 있는 強制義勇軍의 釋放、그리고 北韓側에 動員되어 있는 強制義勇軍의 捕虜認定、拉致人士返送等의 要求가 貫徹되지 않을 時는 退場辭退할 것을 示唆하여 強硬한 意思를 表明한 바 있어 吾人은 三千萬의 이름으로 그 壯意를

激勵하고 初志貫徹을 祈願하는
바이다
(下略)

別紙 二

休戰會談韓國軍第三代代表(現在渡美中)인 劉載興中將는 檀紀四二八五年二月一日就任爾來 다음에 列記한 바와 같은 努力을 繼續함으로서 大韓民國出身被拉致者釋放送還의 促進及早速實現을 敵側에게 強要한 바 있었음.

一. 檀紀四二八五年二月二日

UN側은 赤十字代身에 中立國家代表가 北韓에 가서 拉致人士들을 會見地点에서 會見하여 自由意思에 依하여 各其送還시킬 것을 提案하였으나 敵은 이를 拒否하였음.

一. 檀紀四二八五年二月十日.

捕虜에게 救護物資를 分配하자는 UN提案을 敵은 拒否하였으나 停戰協定調印後 民間人送還을 援助하는 機構를 組織하는데는 敵이 同意하였음.

一. 檀紀四二八五年二月二十日

UN側은 民間人送還을 促進한다는 文句를 成文化하여 協定文에 揷入하자고 主張했으나 敵은 反對였음 卽 UN側은 民間人의 送還促進及早速實現하는 責任을 兩司令官에게 負荷시키자고 提案하였으나 現草案에 이미 責任이 있게된 것이라고 拒絶하였음.

別紙三

結論

檀紀四二八五年一月二十四日 (代表李亨根中將離任約一週日前)

敵側이 民間人을 無條件送還할 用意있음을 明白히한것. (時機, 方法에 關하여는 言及을 回避)

또 檀紀四二八五年二月十日 (代表劉載興中將就任第十日)

敵側은 休戰協定調印後 民間人送還을 援助하는 機構를 組織하는데 同意한 것

이리하야 마참내 被拉致人士의 送還을 實現하는 別添과 如한 協定이 休戰協定中에 包含되기에 이르렀음.

「註」 別添協定文을 一目瞭然케 하기 爲하여 小

官이 拔萃作成한 別表를 添付하였음.

「追伸」

一. 大韓民國政府編「6·25事變被拉致者名簿」(其一, 二, 三冊)
(其四는 公報處統計局編 6·25事變 被殺者名簿)

一. 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家族會編「6·25事變被拉致人士名簿」(第一部) *가족회 18부 조사

一. 大韓民國政府編「6·25事變被拉致人士名簿」(第二部)(及追加分)
(서울特別市 及 開城市)

以上 六冊은 小官保管中에 있으며 被拉致人士總數는 八萬六百六十一名(男, 七萬九千百四十五名, 女, 一千五百十六名)으로 되어 있음

*총계 (80,661명. 男: 79,145명, 女: 1,516명)

別添

休戰協定全文

→ 이후 「휴전협정문」 참고

第59項

ㄱ.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의 軍事統制地域에 있는 者로서 一九五〇年 六月 二十四日에 本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北에 居住한 全体私民에 對하여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다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 돌아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하여야 한다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하는 當時에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의 軍事

統制地域에 있는 者로서 一九五0年 六月 二十四日에
本停戰協定에 確定된 軍事分界線 以南에 居住
한 全部私民에 對해서는 그들이 歸鄕하기를 願한
다면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人民志願
軍司令員은 그들이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돌아
가는 것을 許容하며 協助한다
各方司令官은 責任지고 本目規定의 內容을 그의
軍事統制地域에 廣範히 宣布하며 또 適當한
民政當局을 시켜 歸鄕하기를 願하는 이러한 全
体私民에게 必要한 指導와 協助를 주도록 한다
ㄷ. 双方이 本條第五十九項 ㄱ目에 規定한 私民
의 歸鄕과 本條第五十九項 ㄴ目에 規定한 私民의

移動을 協助하는 措置는 本停戰協定이 效力을 發生한 後
될 수 있는 限 速히 開始한다
ㄹ (1)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를 設立한다
同委員會는 領級將校 四名으로 構成하되 其中
二名은 國際聯合軍司令官이 이를 任命하며
其中 二名은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과 中國
人民志願軍司令員이 共同으로 이를 任命한다
同委員會는 軍事停戰委員會의 全般的 監
督과 指導밑에 責任지고 上記私民의 歸鄕
을 協助하는데 關係되는 双方의 具体的 計劃
을 調節하며 또 上記私民의 歸鄕에 關係되는
本停戰協定中의 一切規定을 双方이 執行하

는것을 監督한다 同委員會의 任務는 運
輸措置를 包含한 必要한 措置를 取함으로서
上記私民의 移動을 促進 및 調節하며 上記私民의
軍事分界線을 通過하는 越境地点(들)을 選
定하며 越境地点(들)의 安全措置를 取하며 또
上記私民歸鄕을 完了하기 爲하여 必要한 其
他任務를 執行하는 것이다

(2)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는 그의 任
務에 關係되는 어떠한 事項이던지 合意에 到
達할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軍事停戰委員會
에 提出하여 決定하게 한다. 失鄕私民歸鄕協
調委員會는 그의 本部를 軍事停戰委員會

의 本部附近에 設置한다.

(3)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가 그의 任務
를 完遂한 때에는 軍事停戰委員會가 即時로 이
를 解散시킨다

檀紀四二八六年十月三十日

1953. 10. 30.

休戰對策硏究會幹事

陸軍大尉 金潤學

休戰對策硏究會委員

國防部次官 閣下

被拉致人士에 關한 件 「報告」

首題件에 關하여 被拉致人士의 歸還을 意味하는 休戰協定第五十九項에 規定된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以下 失歸委로 略稱)發足後의 運營及其歸趨에 對하여는 命에 依하여 銳意探問中 今般政治會議豫備會談 我代表로 汶山에 本部를 둔 李壽榮大領에게 依賴하였던바 別添과 如한 情報를 蒐集提供하여주었삽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別添

十月二九日 汶山天幕村에서 李壽榮大領及 失歸委首席委員 쎄이연(SAYEN)大領間에 交換된 談話內容(自十五時三十分 至 十五時五十分)

李大領:: 失歸委의 業務進行狀況을 알고 싶으니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쎄이연 大領:: 一, 去十月十九日 UNC側軍事停戰委員會 委員長 브라이안少將은 共產側에게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하였다.

a. 民間人送還通過地點을 爲先板門店으로 하자

b. 失歸委의 初會合을 十月二十日에 開催하자

二, 이에 對하여 十月二十一日 共產側은 行政的理由로서 二十七日의 會合은 不可能하다고 通報하였다

李大領:: 앞으로의 失歸委의 計劃은 如何한가.

쎄이언: 앞으로 조금 기대려보아 回答이 않오면 繼續督促하겠다

李大領: 繼續督促하며 强力하게 攻擊하는것이 現段階로는 必要하다. 數十萬家族의 期待는 貴下의 奮斗에 달렸으니 全力을 다하여 주기 바라며 나도 종종 貴下를 尋訪 서로 議論하겠으며 좋은 生覺이 있으면 서로 말하기로 하자

쎄이언: 언제든지 좋다 繼續하여 努力하겠고 또 그것이 나의 上司(칼大將을 指摘)의 意圖이다

檀紀四二八六年 十月 三十一日

休戰對策硏究會幹事
陸軍大尉 金潤學

休戰對策硏究會委員
國防部次官 閣下

車輛修理費請求에 關한件

首題件에 關하야 小官 管守中의 1/4t 짚車는 崔德新少將 乘用車輛으로 UN總會에의 出發時 最高國防委員會事務室用으로 運行할것이라는 指示下에 引受하였던것이온데 左記各項에 列擧한 無理한 運行으로 車体및 其他部分에 損耗乃至故障을 招來. 繼續的인 該任務의 遂行을 爲하야 緊急修理

를 要하게 되여 別添과 如한 修理費의 支出을 不免케 되였사오니 以此 洞燭하시와 善處措置하여 주심을 仰望하나이다.

記

一、去九月十四日附로 小官이 休戰對策硏究會幹事로 外務部에 派遣된 以來 政治會談을 包含한 休戰에 對備하기 爲한 諸情報蒐集으로 汶山方面出張

二、① 特히 印度軍의 蠻行에 依하야 惹起된 反共愛國捕虜射殺事件 眞相現地調査班인 國會議員宋内

② 티마야 中將에의 國會調査班의 書翰 및 回翰傳達로 因한 汶山方面에의 頻繁한 運行.

三、十月二十五日 政治會議豫備會談 我側代表 外務部

次官及李壽榮大領의 補助員으로서 爾來 午後는 汶山 我代表本部에서 會談進行報告書作成을 도읍고 또 이를 外務部長官께 速傳키 爲하야 每日 一五○哩 以上의 長距離運行을 繼續하고 있음.

別添

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十九日

拉致人士問題進捗狀況

豫備會談韓國代表 李壽榮

別紙一

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十八日十九時

於 汶山, 停委本部

一九五三年十二月十八日 板門店에서 召集된 軍事停戰委員會에서 民間人拉致者에 關한 問題가 言及되었다는 消息에 接한 本官은 軍事停戰委員會 UNC側人員과 다음과 같은 交涉을 進行하였음

李大領: 오늘 停戰委員會에서 共產側이 失鄕私民問題에 關하야 言及한 点은 없는가?

리이시少將(美空軍 首席委員):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두터운 書面으로 提案하여 왔는데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

무엇일까?

李大領: 그러면 그 提案을 한部 나에게 줄수 없는가?

바스틴少將(英國): 現今 우리가 아직 研究도 하지 않었는데

李大領: 그들의 提案을 나는 말하는것인데 보는것쯤 어떻겠는가

레이시少將: 只今 한部 밖에 없으나 주진 못하겠으나 보는 것이야,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李大領: 그 提案은 참 興味있는 것인데 「建設的」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데이리准將: 아니, 共產黨提案外에 이언제 「建設的」아닌 것 있었는가

(一同大笑)

夕食後 二十時三十分 세이연, 콜만, 兩大領에게 電話하였으나 不在로 回答이 中斷되었음.

別紙二

檀紀四二八六年 十二月 十九日 八時 三十分

李大領: 昨日 共產側이 提案한 失鄕私民件이 무엇인지 말해 줄수 있는가

세이연大領: 내가 어제 밤에 서울에 갔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였는데, 나의 事務員 말에 依하면 九十八% 우리案과 恰似한 것이라고 한다 을 研究해 보아야 仔細히 알겠다

李大領: 그렇면 내가 板門店會議에 갔다와서 貴官을 尋訪하겠다

세이연大領: 좋다.

別紙 三

檀紀四二八六年十一月十九日十四時十五分 ↓ 十四時三十五分

1953. 11. 19. 2시15분.

於汶山 失私協委事務室

李大領: 그件에 對하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세이연大領: 우리의 提案과 九十%同一한 提案이며 些少한 点에 對하야 若干의 差異가 있으나 이것은 本質的인 差異는 아니다.

첫재, 板門店을 交換地点으로 合意한 것이다.

李: 私民委의 初會合에 言及은 없었던가

세이연: 그것은 言及치 않었으나 우리가 來週 어느날로 提案하여야 하겠다.

李: 些少한 点의 差異란 大概 어떤것인가.

세이연: 假令 말하자면 一時에 交換되는 人員數, 交換事業에 從事할 人員의 數, 設備等의 問題이다.

그리고 저쪽에서 새로운 것을 提案하여 왔는데 即 民間人이 交換될때 個人의 所有物을 가지고 가도록 許容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故意로 UN側 提案에서 除外한 것이였으나 共産側이 提案하여 왔으니 잘 되였다고 본다

李: 그것은 좋은 点이라고 보는데 爲先 우리國民에게 이런 進捗狀況을 알려줄 必要가 있지 않는가

세이연: 極東司令部가 KCAC에 命令하여 直接韓國政府와 協助하여 報道, 其他 計劃等을 하게 되여 있으니 KCAC가 다 잘 할것이다

李大領: 何如튼 一時 바삐 우리 國民에게 이런것을 알려주

어야 그家族들에게 多少나마 希望을 줄수 있는
것이다.
어젯든、일을 着手함에 한걸음 가까워졌으니 반가
운 일이며 貴官이 잘 싸워 주어야 하겠다.
세이연大領: 勿論 共産側으로부터 큰것을 期待할수는 없지
만은 恒常 希望은 가지고 일해야 겠다
그리고 세이연 大領은 共産側의 昨日提案을 複寫하는데로
一部를 小官에게 보내 주겠다고 約束 하였음

別紙 四.

以上의 經緯로서、미루어 보아 本官은 左記와 如히 推測함、

記

一、來週中(잘되면은 水曜日前)으로 失鄕私歸協委의 初會合
이 召集될것임.

二、初會合以後 二ー三次의 會議後에는 實地歸還協助의
業務가 開始될수 있음、빠르면은 十二月一日(或은 初旬中)

三、實地로 拉致人士가 南韓으로 도라올수 있는 最速한 時日은
一九五四年一月一日(初旬頃)이 될수 있음

其時日을 圖示하면:

(以上은 迅速한 合意를 前提로 豫測임)

檀紀四二八六年 十一月 十九日

休戰對策研究會幹事
陸軍中領 裵東傑
同
陸軍大尉 金潤學

國防部次官 閣下
(總務課長 經由)
委員

車馬費 申請에 關한 件

首題件에 關하여 小官等은 檀紀四二八六年 九月 十四日附 休戰對策研究會 國防部側幹事로서 外務部에 派遣되어 爾來 休戰調印에 隨伴하여 惹起되는 諸般事態의 推移를 注視하는 한便, 이에 對한 研究

調査를 爲한 資料 및 情報를 蒐集하옵는中 左記와
如히 多少의 經費가 每月 必要하옵기 玆에 仰請하나이다.

記

用處	幹事一名의 必要額	幹事二名分	備考
晝食代	五、〇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〇	提報者와의 會食費도 包含됨.
連絡에 要하는 때 人 運賃及旅費 煙草代	五、〇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〇	
計		二〇、〇〇〇.〇〇	(二萬圜)

追記、

一、江陵을 爲始한 諸出入港에 駐在하고 있는 中立國監督
委員會視察小組員의 動向에 對한 特別調査가 要請
되는 때는 直接現地에 出張이 必要로 되며 이에 對한
旅費 其他費用은 硏究會本部에서 擔當支出할 것으로

思料됨

二、境遇에 따라서는 運轉兵의 食事도 考慮치 않을
수 없음.

檀紀四二八六年十一月二十一日

休戰對策硏究會幹事
陸軍中領 裵東傑
同
陸軍大尉 金潤學

總務課長 經由
國務部次官 閣下

車馬費 申請에 關한 件

標題件에 關하여 小官 等은 檀紀四二八六年 九月
十四日附 休戰對策硏究會 國防部側 幹事로서 外
務部에 派遣되어 兩來 休戰調印에 隨伴하여 惹
起되는 諸般事態의 推移를 注視하는 한편 이에

對한 硏究調査를 為한 資料와 情報를 蒐集하
는 中 別記와 如히 多少의 經費가 每月 必要되
는 바 茲에 仰請하나이다

記

用處	幹事一名의 必要額	幹事二名分	備考
晝食代	五,〇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〇	情報者와의 會食도 包含됨.
連絡 및 [illegible] 茶菓代, 煙草代	五,〇〇〇.〇〇	一〇,〇〇〇.〇〇	
計		二〇,〇〇〇.〇〇	(二萬圜)

追記

一. 江陵을 為始한 諸出入港에 駐在하고 있는 中立國
監督委員會視察小組員의 動向에 對한 特別
調査가 要請되는 때는 直接 現地에 出張이 必要

로되어 이에 對한 旅費其他費用은 研究會本部
에서 擔當支出할것으로 思料됨
二、境遇에 따라서는 運轉兵의 食事도 考慮치않
을수 없음

檀紀四二八六年十一月二十二日

休戰對策研究會幹事
陸軍大尉 金潤學

休戰對策研究會委員

國防部次官閣下

被拉致人士에關한件

「報告」

首題件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構成爾來 其進捗에
關한 情報蒐集次 小官 文山에 出張、李壽榮大領에게 委囑
하야 其結果를 第一次로 報告하온바 이에 對하여는 檀紀四
二八六年十月三十日附報告를 參照하시옵기 바라오며 失私
歸委運營에 對한 繼續的인 提報를 約束한 政治會議豫備
會談韓國代表 李壽榮大領은 負荷된 重任完遂로 因한

檀紀四二八六年十二月二日

休戰對策研究會幹事

陸軍中領 裵東傑

同

陸軍大尉 金潤學

總務課長 經由

國防部次官 閣下

機密費申請에關한件

首題件에關하여 小官等은 檀紀四二八六年九月十四日附休戰對策研究會國防部側幹事로서 外務部에派遣되어爾來 休戰調印에隨伴하여 惹起되는諸般事態의推移를注視하는 한便 이에對한研究調

時間的餘裕없음을 不顧하고 小官을 經由하여 別添과如한 第二次的 秘情報를 昨二十日十八時 外務部에서 手交하여주었삽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追伸」 此報告書의 問答內容은 아직 一般에게는 公表치않는다는 約束下에 交換된 것이라 함.

査를 爲한 資料및情報를 蒐集하옵는中 別記와
如히 多少의 經費가 每月必要하옵기 玆에 仰請하나
이다.

記

用處	必要額	備考
外食代및其他	二〇、〇〇〇圜	提報者와의 會食費도包含됨

追記

一、江陵을爲始한諸出入港에駐在하고있는中立國監督委員會視察小組員의動向에對한特別調査가要請되는때는直接現地에出張이必要로되며 이에對한旅費其他費用亦是此機密費에包含됨、

檀紀四二八七年一月五日

休戰對策研究會幹事

陸軍中領 裵 東 傑

陸軍大尉 金 利 學

委員

國防部次官 閣下

(21)軍馬費申請에關한件

首題件에關하여 小官等은 檀紀四二八六年九月十四日附 休戰對策研究會 國防部側幹事로서 外務部에派遣되어 爾來、休戰諸紛에隨伴하여 惹起되는 諸般事態의 推移를 注視하는 한便、이에對한研究調査를 爲한 資料및情報를 蒐集하옵는中 左記와 如히多少의 經費가 每月必要하옵기 玆에 仰請하나이다

記

用處	幹事一名의 必要額	幹事二名分	備考
晝食代	五、000.00	一0、000.00	提議者와의 会食費包含
連絡에 要하는 出張旅費交通費代	五、000.00	一0、000.00	
計		二0、000.00	(二萬圜)

追記

一、江陵을 爲始한 諸出入港에 駐在하고 있는 中立國監督委員會 視察小組員의 動向에 對한 特別調査가 要請되는 때는 直接現地에 出張이 必要로 되며 이에 對한 旅費 其他費用은 研究會本部에서 擔當支出할 것으로 思料됨.

二、境遇에 따라서는 運轉手와 食事도 考慮치 않을 수 없음.

檀紀四二八七年三月二十日

休戰對策研究會幹事

陸軍中領 裵東傑

陸軍大尉 金潤學

委員

國防部次官 閣下

車馬費申請에 關한 件

首題件에 關하여 小官等은 檀紀四二八六年九月十日附 休戰對策研究會國防部側幹事로서 外務部에 派遣되어 爾來、休戰協定調印에 隨伴하여 惹起되는 諸般事態의 推移를 注視하는 한便、이에 對한 研究調査를 爲한 資料및情報를 蒐集、하옵는中 左記와 如히 多少의 經費가 每月必要하옵기 玆에 伏請하

外務部

나이다

記

用處	晝食代	連絡에 要하는 빠쓰 乘車賃及煙草代	計
幹事一名의 必要額	五,000.00	五,000.00	
幹事二名分	一0,000.00	一0,000.00	二0,000.00
備考	提報者와의 會食費包含		(二萬圜)

追記

一、江陵을 爲始한 諸出入港에 駐在하고 있는 中立國監督委員會視察小組員의 動向에 對한 特別調査가 要請되는 때는 直接現地에 出張이 必要로 되며 이에 對한 旅費其他費用은 研究會本部에서 擔當支出할 것으로 思料됨

二、境遇에 따라서는 運轉兵의 食事도 考慮치 않을수 없음.

報告保留分

앞 大統領 閣下
經由 公報秘書官

부터 停戰會談韓國軍代表
陸軍少將 崔德新

小官着任以來各地로부터의 停戰反對決議文을 接受簿(別添第1)에 記載된바와 如히 接受하였고 今日 反共捕虜의 血書陳情書(別添第2)를 接受하였사온데 此陳情書의 內容은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公開하였습니다.

記.

日時 — 檀紀4286年6月8日9時30分

對象 — 國內外通信 및 新聞